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899
------------	------

2021년 12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1년 10월 1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5차 교통위원회(2021년 12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행친화기획관 이해경)

가. 제안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21. 6. 23.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서울특별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 신설 등)의 반영을 통해,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의 원활한 조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의 내실을 기하고,
- 모법 없이 제정·시행되어 온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보행사업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법 제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법에 맞추어 보완함
 - 1) 법에 따라 목적 조항에 모법을 명시(안 제1조)
 - 2) 법 제2조의 정의에 맞추어 조례의 정의 조항을 구체화(안 제2조)
- 그 밖에 법에서 서울시장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1) 법 제6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 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3) 법 제11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안 제16조)

4) 법 제14조의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안 제17조)

5) 법 제23조의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6)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시장 → 구청장) 등(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15. ~ 2021. 8. 4.

○ 제출의견 :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시장과 시민의 책무, 보행안전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부칙을 통해 모범없이 제정·시행되어 온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관련(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목적)는 동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시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정의)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임
- 보행안전법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동 제정조례안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안 제1조의 제정목적과 부합하다 할 것이며

안 제2조는 보행안전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보행자길”)를 새롭게 정의하고, 기존 조례의 용어중 관련법 규정과 상이한 용어(“보행환경”)는 일치시켜 조례 적용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기본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관련(안 제3조 및 제4조)

- 안 제3조(기본책무)는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이며, 안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보행 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임
- 보행안전법 제4조제1항1) 및 제2항2)에서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시장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1)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조례안에 시장의 기본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임

- 또한 보행안전법 제3조제1항³⁾에서는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동 제정조례안에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의무를 시민에게 부여하는 것은 보행안전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연구결과⁴⁾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를 40~50% 감소시키고 전방주시율은 15% 정도 떨어뜨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다니는 사람을 빗댄 ‘스몐비’⁵⁾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등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이 교통사고 유발요인으로 인식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민의 의무로 이를 명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할 것임

3)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4) 이수일·김태호(2016),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시 시각 인지특성 연구”,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5) 스몐비(Smombie) = 스마트폰(Smart phone) + 좀비(Zombie)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시 관련(안 제6조)

- 안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는 5년마다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기초가 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보행안전법 제6조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7)에서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 제정조례안을 통해 시장의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제2항의 실태조사 항목, 안 제6조제3항의 보행교통 개선 지표 수립, 안 제6조제4항의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은 보행안전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지속가능교통법”) 제37조8)

-
- 6)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 7)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이하생략>
 -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9)에서 시장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향후 보행정책의 효과성 판단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한 점, 지속가능교통법 제37조제6항에서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 보행안전법과 지속가능교통법에서 정하는 실태조사가 조사시행시기, 조사항목 등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제정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관련 (안 제7조 및 제8조)

- 안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는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는 매년마다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실행

별·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지표를 종합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지표를 작성·공표·보급하여야 한다.

④~⑤ < 생략 >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국토교통부령 및 조례로 정한다.

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보행안전법 제7조의2¹⁰⁾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8조¹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¹²⁾는 매년 2월말까지 실행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동 제정조례안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행안전법 제7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른 법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지방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¹³⁾”을 통해 수립시기가 유사한 여러 교통관련 계획들을 모아 일괄용역 발주할

10)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생략>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보행 관련 계획

②~⑩ <생략>

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실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④ <생략>

13) 교통정책과-19765(2018.8.1.)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시 다른 법정계획까지 고려하여 수립하거나 유사한 다른 법정계획들과 일괄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관련(안 제10조)

- 안 제10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는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시 준수해야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 제6조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기존 조례 제6조는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 제정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서울시는 동 제정조례안 제10조에 따라 관련한 세부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한편 기존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등산로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 발의¹⁴⁾된 상황으로

보행안전법 제2조¹⁵⁾에 따라 등산로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

14) 의안번호 2816호(발의자 : 김경 의원, 발의일 '21.10.15.)

1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보행자길”에 포함되어 시장이 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관련 (안 제11조~제15조 관련)

- 안 제11조~제15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보행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새롭게 신설¹⁶⁾된 보행안전법 제8조의3제1항¹⁷⁾에서는 시장은 보행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3제2항¹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4제4항¹⁹⁾에서는 보행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을 말한다.

가~사. <생략>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16) 법률 제17694호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6호 시행 2021. 6. 23

1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 3. <생략>

1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동 제정조례안에서 보행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²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회 운영, 운영세칙 등 보행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보행안전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임

다만 보행안전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교통실 내에 이미 설치하여 운영중인 위원회 중 보행안전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운영을 방지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관련(안 제16조)

○ 안 제1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는 시장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보행안전법 제11조²¹⁾는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같은 법 시

20)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행령 제10조22)는 사업시행전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지 고려사항 등에 대한 시장의 사무를 명시하고 있어 동 제정조례안에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 보행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시행²³⁾중에 있으나 모든 사업마다 사업시행전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완료후 사업평가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동 제정조례안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관련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게 될 경우 자치구 공모 등 사업 추진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평가를 위해 사전에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간 등 내실있고 철저한 평가계획 수립과 사업평가에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임

■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관련(안 제17조)

- 안 제17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는 시장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경우 이를 조치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생략>
-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생략>
-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13~'21년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 총60개소(사업완료 52개소, 추진중 8개소)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제정조례안은 보행안전법 제14조²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 환경개선지구에서의 불법시설물 우선적 정비,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 권고 및 이에 따른 지원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다만 노상적치물²⁵⁾, 옥외광고물²⁶⁾ 등 불법시설물은 여러 기관 및 부서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도로상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등은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관리부서를 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시설물 정비 및 관리체계 마련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운영 등 관련(안 제18조 ~ 제20조)

2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생략>

② <생략>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도시교통실에 두는 과)

⑪ 보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2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⑩ 도시빛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6.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안 제18조~제20조는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 등을 통합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것임
- 보행안전법 제23조²⁷⁾는 도로관리청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²⁸⁾제5항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협의회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보행안전법 제23조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공공시설물의 통합설치 등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점을 볼 때 향후 협의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성 계획 수립과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간별로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공공시설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관리청(「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5. <생략>

③ 협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에서 도로 관리청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 관리청이 정한다.

■ 권한의 위임 관련(안 제22조)

- 안 제18조는 보행안전법 제28조제3항²⁹⁾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보행자전용길³⁰⁾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철저한 안내 및 서울시와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치구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다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운영중에 있다는 점에서 자치구 위임사항을 개별 조례마다 규정하기 보다 사무위임 조례에서 일원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기존 조례 폐지 관련(부칙 제2조)

- 동 제정조례안이 마련될 경우 기존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고 사용 용어도 차이가 있어 관련 업무추진시 조례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바 동 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2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9호(2017.4.6.)

- 보행자전용길 지정고시 : 중구 남대문로5가 526일대 “서울로7017 본선”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5년마다,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보행교통 개선지표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역사적 전통, 문화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한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간선도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
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
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보행교

통 및 보행정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보행친화정책 업무 소관 실·국장, 소관 과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를 진행하며,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을 통합·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도시교통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도로구간을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
2. 해당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해당 도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해당 도로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5.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협의회에서 도로 구간별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조(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2. 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3. 법 제30조에 따른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한 차마(車馬)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절차 및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한다.